전국1타 종로메가랜드 ☎ 02) 2135-1806 전원합격!! 이론요약과정

2021년 03월~04월(7주차) 핵심내용 및 문제

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



[제2편] 부동산거래신고법령 제3장 외국인특례

- ① 외국인이 계약(매매계약 제외)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시 : 계약 일로부터 (60일/6개월) 이내에 취득신고하여야 한다. 위반시 (300 만원/100만원) 이하 과태료)
- ② 외국인이 계약 이외의 원인(상속, 경매, 합병, 신축 등)으로 소유권 취득시: 소유권취득 일로부터 (60일/6개월)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. 위반시 (300만원/100 만원)이하 과태료.

외국인 특례

- ③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 국적변경시 취득신고: 국적변경일로부터 (3개월/6개월)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 위반시 (300만원/100만원) 이하 과태료.
- ④ 허가구역: ()시설보호구역, ()보호구역,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, 생태경관보존지역 (허가없이 거래한 경우에는 ()년 이하의 징역 또는 ()원 이하의 벌금)
- ⑤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상의 취득신고를 (한 것으로 본다/ 별도로 하여야 한다).
- ⑥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상의 취득허가를 (받은 것으로 본다/ 별도로 받아야 한다).

전 답 ① (60일) (300 만원) ② (6개월) (100 만원) ③ (6개월) (100 만원) ④ 군사시설, 문화재, 2년, 2천만. ⑤ (한 것으로 본다. ⑥ (받은 것으로 본다).

핵심문제

- 01. 「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」상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이다. "틀린" 것은?
-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(매매계약은 제외)을 체결 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.
- ② 외국정부나 국제기구도 외국인 특례 상의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.
- ③ 외국인이 계약(매매계약은 제외)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워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- ④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별도의 취득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.
- ⑤ 외국인이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02. 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「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」를 설명한 것으로 "옳은"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.
- L. 법원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(경락대금완납일)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·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.
- c. 「자연환경보전법」상 생태·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 지 취득의 계약은 유효하다.
- ㄹ. 외국인이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시 장 등의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정 답 ============

01.③ 02.①

[게2표] 즈게시ㅁ (초구)		
[제3편] 중개실무 (총론)		
실무 절차	중개계약 ⇒ 중개대상물 조사`확인 ⇒ 영업(판매)활동 ⇒ 거래계약의 체결	
중개계약	① 성격: 부동산중개계약의 성격은 민사중개계약, 낙성` 불요식계약, 유상' 쌍무계약, 위	
	임과 유사한 계약이다. ② 종류: 독점성을 기준(일반, 전속, 독점), 보수지급방식 기준(정가, 정률, 순가), 개업공 인중개사의 숫자 (단독, 공동) 등으로 구별.	
	③ 순가중개계약의 체결, 그 자체는 (허용된다). 다만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법정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받으면 그때는 초과중개보수로 처벌된다.	
중개대상 물 조사` 확인	① 방법 : ① 공부상 검토(대장 등기부 등) + ⑥ 현장답사 (유치권 등) + ⑥ 자료요구 ① 공부상 검토 : ② 사실관계는 (대장)을 기준으로, 권리관계는 (등기부)를 기준으로 한다. ⑥ 토지의 경계는 (지적도, 임야도)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. ⑥ 현장답사 : 지세, 법정지상권, 유치권, 분묘기지권 등은 현장답사를 통하여 확인한 다.	
	© 자료요구: 권리를 (이전)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. ② 설명사항: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, 권리관계,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, 내'외부시설물의 상태, 벽면'도배상태, 환경조건, 입지조건, 취득 조세, 거래예정가격, 중개보수	
영업활농	아이다(AIDA) 원리, 셀링포인트(selling-point) 등을 활용하여 클로징(Closing)을 유도.	
거래계약 의 체결	 ① 거래계약서: (자유서식)으로,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다. ② 전자계약: 현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회원 가입할 수 있다 (무등록중개업을 방지하는 효과,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도성 인정). ①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 계약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, 전자서명` 날인을 하여, 전자 거래계약서와 전자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, 자동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존되며, 부동산거래신고(매매)나 확정일자(임대차)가 자동부여되는 편리함이 있다. ⑥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, 부동산거래신고를 (한 것으로 본다). ⑥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,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(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으로 보존된다). 	

법정 지상권	 ① 토지와 건물(또는 입목)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다가, 어떠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(또는 입목)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, "건물(또는 입목)의 보존을 위하여" 건물(또는 입목)소유자에게 토지사용권(지상권)을 법률의 규정(법정)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. ② 민법 제366조: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, 토지소유 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. ③ 민법 제305조: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 후, 그 지반인 토지를 처분한 경우, 토지의 특별승계인은 (전세권설정자)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) ④ 가등기담보법 제10조, 입목법 제6조,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. ⑤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,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유치권	① 민법 제320조(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)에 따라 성립된다.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,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 ② 임대차보증금이나, 권리금에 대하여는 유치권이 (성립하지 아니한다). ③ 건물 공사대금채권은 유치권이 (성립한다).
분묘 기지권	①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위하여, "분묘를 보존"하기 위하여, 타인의 토지를 사용`수익하는 (물권/ 채권)이다. ② 성립요건 : 〈봉〉〈유〉 (봉분)과 (유골)이 있어야 하며, 또한 다음의 3가지 유형 중하나를 갖추어야 한다. ③ 〈시〉 타인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한 후, (20년/ 10년)이상을 점유하여 시효 취득한 경우. ⑤ 〈승〉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설치한 경우. ⑥ 〈자〉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, 분묘에 대한 이장이나 철거의 특약없이 토지만 거래된 경우에 인정된다. ③ 인정범위 ⑤ 시간적 범위 : 분묘를 수호` 봉제사를 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(계속/ 30년 동안만) 존속된다. ⑥ 공간적 범위 : 분묘기지권은 (분묘기지에 한정된다/ 기지뿐만 아니라 필요한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). ④ 한계 ⑤ 봉분이 없는 "평장"이나 "암장"은 분묘기지권이 (인정된다/ 인정되지 않는다). ⑥ 유골이 없는 "가묘"에 대해 분묘기지권이 (인정된다/ 인정되지 않는다).
장사 등에 관한 법률	① 개인묘지: 설치한 후 (30일/ 1월) 이내에 (신고하여야/ 허가받아야)하고, 면적은 (30㎡/ 100㎡)를 초과할 수 없다. ② 가족묘지: (사전허가/ 사후신고), 가족당1개소에 한함. 면적은(100㎡/ 1천㎡) 이하. ③ 종중(문중)묘지: (사전허가/ 사후신고). 종중(문중)당 1개소에 한함. 면적은 (100㎡/ 1천㎡) 이하. ④ 법인묘지: (사전허가/ 사후신고). 면적은 10만㎡ (이상). ⑤ 가족`종중`법인묘지의 "1기"당 면적은 ()㎡ 이하. 합장은 ()㎡이하.

- ⑥ 사설묘지 설치기간 : (30년/ 15년). (30년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: 최장 60년)
- ⑦ 기간 만료시 (1년/ 2년)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.
- ⑧ 매장신고 : 매장 후 (30일/60일)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① 경자유전의 원칙: 원칙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,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상한: ③ 상속은() 제곱미터 이내로 소유, ⑥ (8년/ 5년)이 상 농업경영 후 이농시() 제곱미터 이내로 소유, ⑥ 주말 체험영농은()제곱미터 미만(세대원 총면적)으로 소유할 수 있다.

농지법

- ③ 주말'체험영농은 농업경영계획서 (필요없이/ 첨부하여),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다.
- ④ 농지임대차 : 부득이한 경우, 예외적으로 농지임대차 가능. (서면계약/ 구두계약)이 원칙. ③ (3월/6월) 이상 해외여행 중, ⑥ 부상으로 (3월/6월)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⑥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⑧ 질병 등
- ⑤ 임대차 기간은 (3년/ 2년) 보장, 농지임차인에게 대항력 부여.

절 달 〈분묘기지권〉① 물권 ② ③ (20년) ③ ③ (계속) ⓒ (기지뿐만 아니라 필요한 주위의 공지까지미친다). ④ ⑤ (인정되지 않는다) ⓒ (인정되지 않는다) ⓒ (인정되지 않는다) . // ① (30일) (신고하여야)(30㎡) ② (사전허가), (100㎡) ③ (사전허가). (1천㎡) ④ (사전허가) ⑤ (10)㎡, (15)㎡ ⑥ (30년). ⑦ (1년) ⑧ (30일) // 〈농지법〉② ⑤ 1만, ⓒ (8년). (1만) ⓒ (1천). ③ (필요없이), ④ 서면계약 ⑤ (3월) ⓒ (3월) ⑤ (3년)

핵심문제

03. 부동산 중개계약과 중개실무에 대한 으로 틀린 것은?

- ① 현행 「공인중개사법」상 명문 규정이 있는 중개계약의 형태는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뿐이다.
- ② 순가중개계약은 부동산투기와 거래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서는 허용하지 않는 형태이다.
- ③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.
- ④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.
- 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
04. 다음 중 분묘기지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시 판례에 따름)

- ① 분묘기지권은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관리·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일종의 물권이다.
- ② 분묘의 존속기간은 약정기한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, 또한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속된다.
- ③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하지 않고,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 공지를 일부 포함한다.
- ④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 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- ⑤ 분묘기지권의 시효로 인한 취득은 2001.1.13.(장사법 시행) 이후에 점유를 개시한 분묘의 경우에도 인정된다.

05. 개업공인중개사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
-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.
- ② 개인묘지는 20㎡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③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에 하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, 그 전체 면적은 100㎡ 이하여야 한다.
- ④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 관계이었던 자의 분묘를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.
-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.

06.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
- 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으면,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② 주말·체험영농을 통한 농지의 취득은 법인은 불가하며, 한 세대당 1천m²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.
- ③ 농지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.
- 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시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, 신청인은 바로 시·구·읍·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07. 다음은 「농지법」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제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. 옳은 것은?

-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군·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.
- ②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1천 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다.
- ③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다.
- ④ 도시민이 주말·체험영농을 하고자 할 때에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, 이는 세대원 총면적을 기준으로 한다.
- ⑤ 도시민이 주말·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치 않으나,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하여야 한다.

03.2 04.5 05.2 06.4 07.4

[제3편] 중개실무 (각론)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
검인제도

① 〈계.소.리〉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, (계약/ 법률규정)을 원인으로 (소유권이전등기/ 모든 물권등기)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시`군`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	②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(받아야 한다/ 받은 것으로 본다).	
	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(받아야 한다/ 받은 것으로 본다).	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		
적용	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(소유권` 전세권 등 물권등기/ 소유권등기에 한하여)를 할 때에 실	
범위	명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며,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명의신탁을 해서는 아니된다.	
	① 2자간 등기명의신탁(=양자간, 이전형 등기명의신탁)	
	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 약정은 (유효/ 무효), 이전등기는 (유효/ 무효), 물권변	
	동 (유효/ 무효) ▶ 여전히 소유권은 (명의신탁자/ 명의수탁자)에게 귀속된다.	
	©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,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(대항할 수	
	있다/ 대항하지 못한다). 제3자는 선의`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.	
	© 명의수탁자가 수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, 횡령죄 (해당한다/ 해당하지 아니한	
	다).	
	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 (=중간생략형 명의신탁)	
	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 명의신탁약정은 (유효/ 무효), 이전등기는 (유효/ 무효), 무리병도 (유효/ 무효) ► ▲ 유리용 여전을 메드인에게 가스되고 (명인사타기는 명인사 타기는 명인사 타기는 명인사 타기는 명인사 타기는 명인사 타기를 받는 명인사 하는 명인 명인 명인사 하는 명인	
	물권변동 (유효/ 무효) ▶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귀속된다. (명의신탁자는 명	
O뒴	의수탁자 등기 말소청구를 대위행사한 후, 소유권이전 청구 가능)	
유형	©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,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(대항할 수	
	있다/ 대항하지 못한다). 제3자는 선의`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.	
	© 명의수탁자가 수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, 횡령죄 (해당한다/ 해당하지 아니한다).	
	의 계약 명의신탁 (위임형 명의신탁)	
	③ 계곡 경기전곡 (유럽왕 경기전곡) ③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, 명의수탁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하는	
	형태이다.	
	©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(유효/ 무효).	
	© 매도인이 선의의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(유효/ 무효), 물권변동 (유효/ 무	
	효), 소유권은 (명의수탁자/ 명의신탁자)에게 귀속된다.	
	②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, 횡령죄에 (해당한다/ 해당되지 아니한	
	다). 제3자는 선의`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.	
	* 〈배.종.종〉 배우자(법률혼에 한함), 종중, 종교단체의 경우는 탈세` 탈법` 강제집행면탈	
특례	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이 (유효/ 무효)하고, 이전등기도 유효하	
	다.	
제외	* 양도담보, 가등기담보, 구분소유자의 공유등기, 신탁등기는 명의신탁이 아니다.	
	①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: 부동산평가액 () % 범위 내.	
	② 이행강제금 : ① 1차 :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시 (부동산평가액의 ()%)	
처벌	© 2차 : 다시 1년 경과시 (부동산평가액의 ()%)	
	③ 벌칙 : ① 명의신탁자 - ()년이하의 징역 또는 ()억원 이하의 벌금	
	© 명의수탁자 - ()년이하의 징역 또는 ()억 이하의 벌금.	

전 답 ① (계약) (소유권이전등기) ② (받은 것으로 본다).③ (받은 것으로 본다).// (소유권` 전세권 등 물권등기) // ① ⑦ (무효),(무효),(무효) ▶ (명의신탁자) ⑥ (대항하지 못한다). ⑥ (해당하지 아니한다). // ② ⑦ (무효), (무효) ⑥ (대항하지 못한다). ⑥ (해당하지 아니한다). // ③ ⑥ (무효). ⑥ (유효), (유효), (명의수탁자) ⑧ (해당되지 아니한다).// (유효) // ① (30) % 범위 내.// ② ⑦ (부동산평가액의 (10)% ⑥ (부동산평가액의 (20)% ③ ⑦ (5)년 (2)억원 ⑥ (3)년 (1)억

핵심문제

- 08. 다음은 "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"에 관한 내용이다. 옳은 것은?
- ①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거래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.
- ④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⑤ 쌍무계약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09. 신탁자 甲과 수탁자 乙간 명의신탁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丙(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름)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乙의 명의로 경료된 뒤 乙이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. 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 "옳은" 것은?
- ① 수탁자 乙과 매수인 丁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, 丁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.
- ② 신탁자 甲과 乙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나, 乙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.
- ③ 丁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나, 신탁자 甲은 丁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.
- ④ Z의 처분행위는 「형법」상 횡령죄로 처벌된다.
- ⑤ Z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
- 10.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.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(제30회 변형)
 - 그 사례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.
 - L.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,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 - ㄷ.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,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 - ㄹ.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08. 4 09. 2 10. 4

♥ 수고하셨습니다 ♥화이팅!!!♥♥(다음카페) 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♥